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66
----------	-----

제출년월일 : 2006.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70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 나. 노인목욕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으로 지급함(안 제3조)
- 다. 요금정산은 영주시장과 한국목욕협회영주시지부장과의 목욕요금 후불
협정에 의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노인복지법) 발췌 별첨
- 나. 예산관련사항
 - 소요액 : 382,500천원 (12,500명×3,000원×12월×85%)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목욕권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노인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목욕비 지급기준일은 제2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
2. 노인목욕비는 직접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급한다.
3.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월 2매 이하로 한다.
4.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일자가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1의 목욕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목욕권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도록 한다.

제5조(목욕권 사용) ①목욕권은 한국목욕업협회영주시지부(이하 “목욕협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목욕업소 및 소백산풍기온천장(이하 “풍기온천”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목욕권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풍기온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을 제한한다.

제6조(요금정산) ①시장은 한국목욕업협회영주시지부장(이하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목욕요금 후불 협정”에 의거 목욕협회장은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구비서류(사용한 목욕권, 통장사본, 청구서 등)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③풍기온천 이용요금 정산은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읍·면·동장은 목욕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배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이 이통장에게 일괄 배부할 경우에는 이통장이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수령자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목욕권(안)

<앞면>

년도 No. _____

어르신 목욕권

敬  老

영 주 시 장

<뒷면>

유의사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까지
- 사용업소 : 관내목욕업소 및 풍기온천장
- 풍기온천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과)

노인목욕권 수불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기관별	일자	구분	수입	지급	목욕권 연번호	잔량	비고
계							
본청							
풍기읍							
이산면							
·							
가흥2동							

(별지 제2호서식)

노인목욕권 배부대장

(읍·면·동)

목욕권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급일	지급량	수령자	비고

관련법령 발췌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